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. 4. 4 선고 2017가단1246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4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. 7. 13. 접수 제3499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임수희

별지